

1. 개정이유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근거가 어선법 제37조의 2제2항에 마련됨. 이에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도·감독 권한의 수행 주체와 지도·감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주체를, 현행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등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수행자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지도감독권의 범위는 어선의 건조·개조 및 수리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의 제목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어선의 건조·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생 략)</u> <u><신 설></u>	<u>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및 어선 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 건조·개조업자의 어선의 건조·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u>